

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

2021. 4.

본 『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』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교육부 지침 및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각 전형별 일정, 전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『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

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

1.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

모집단위	입학정원		
	주간	야간	합계
초등교육과	598명	0	598명

2. 모집시기 및 전형별 모집인원

모집시기	전형명		정원 구분	모집인원
수시모집	일반전형	학생부종합(교직적성전형)	정원 내	245명
	지역균형선발전형	학생부종합(학교장추천전형)		70명
	고른기회 특별전형	학생부종합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	5명
		학생부종합(저소득층학생전형)		20명
		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)	정원 외	23명
		학생부종합(장애인학생전형)		20명
	학생부종합(서해5도학생전형)	3명		
	소 계			386명
정시모집 「나」군	일반전형	수능(일반학생전형)	정원 내	235명*
	고른기회 특별전형	수능(만학도전형)		25명
		수능(저소득층학생전형)	정원 외	9명
	특별전형	기타(탈북학생전형)		3명
	소 계			272명
합 계				658명

* 2021학년도 정시모집 등록포기자 2명 이월 인원 포함

※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【학생부종합(교직적성전형, 학교장추천전형, 국가보훈대상자전형, 저소득층학생전형)】의 최종 등록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정시모집 정원 내 수능(일반학생전형)으로 이월 선발함

※ 수시모집 정원 외 개별 전형별로【학생부종합(농어촌학생전형, 장애인학생전형, 서해5도학생전형)】 최종 등록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에는 정시모집 동일 지원자격 전형으로 이월 선발함

※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성비 적용 선발하지 않음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전형 구분		지원 자격
학생부종합 (교직적성전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교직 잠재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한 자
학생부종합 (학교장추천전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교직 잠재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※ 추천인원: 계열 구분 없이 고교별 2명 이내
고른기회 입학전형	학생부종합 (국가보훈대상자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학생부종합 (저소득층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
	학생부종합 (농어촌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다음 조건에 <u>모두</u> 해당하는 자(중·고교 조기 졸업자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-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자와 부·모가 모두 거주한 자
	학생부종합 (장애인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(자폐성장애인, 정신장애인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
	학생부종합 (서해5도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-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2. 수시모집(학생부종합전형) 평가 방법

❖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전형	구분	선발방법	선발비율	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		비고
				서류평가	면접평가	
학생부종합 (학교장추천전형)을 제외한 모든 전형	단계별 전형	1단계	200%	100% (1,000점)	-	수시모집 모든 전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
		2단계	100%	70% (700점)	30% (300점)	
학생부종합 (학교장추천전형)	일괄 합산	일괄 합산	100%	100% (1,000점)	-	

1. 전형별 지원 자격

구분		지원 자격
수능 (일반학생전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한 자
고른기회 입학전형	수능 (만학도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만23세(2000. 2. 29.(화) 이전 출생자) 이상인 자 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한 자
	수능 (저소득층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(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)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
	수능 (장애인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(자폐성장애인, 정신장애인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
	수능 (농어촌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,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(중·고교 조기졸업자 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(읍, 면 지역) 또는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자와 부·모가 모두 거주한 자
	수능 (서해5도학생전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,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영역을 모두 응시하고,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해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·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기타 (탈북학생전형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탈북학생

2. 정시모집(수능위주) 평가 방법

❖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모집시기	구분	선발방법	선발 비율	전형요소 반영 점수		비고
				수능성적	면접평가	
정시모집 「나」군	단계별 전형	1단계	150%	100% (1,000점)	-	정시모집 모든 전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
		2단계	100%	70% (700점)	30% (300점)	

※ 학교생활기록부(교과성적 등), 검정고시 성적 등은 반영하지 않음

❖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방법

가. 1단계(수능성적)

반영 영역	활용 지표	반영 비율	반영 점수	반영 방법	비고
국어	백분위	25%	250점		반영 영역별 별도의 지정 선택과목 없음
수학	백분위	25%	25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학 선택과목 중 '미적분' 또는 '기하' 선택 시 해당 백분위 점수의 3% 가산점 부여 ※ 단, 수학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 점수가 1,0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	
영어	등급	25%	250점	■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사용	
탐구	백분위	25%	250점	■ 탐구영역 2개 과목의 백분위 평균 반영	
계		100%	1,000점		

※ 제2외국어·한문은 반영하지 않음

※ 영어 영역: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 부여

등급	1	2	3	4	5	6	7	8	9
환산점수	100	95	90	85	80	75	70	65	60

※ 한국사 영역: 수능 반영점수(1,000점 만점)에서 최대 10점 감점

등급	1	2	3	4	5	6	7	8	9
감점	0	0	0	0	2	4	6	8	10

나. 2단계(수능성적): 1단계 전형 성적 × 0.7

3. 정시모집(기타-탈북학생전형) 평가 방법

❖ 선발방법 및 전형요소 반영 비율 및 점수

구분	선발방법	선발비율	전형요소 반영비율		비고
			수능성적	면접평가	
일괄합산	일괄합산	100% (1,000점)	-	100% (1,000점)	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없음